

BK21 Four 양자물질 극한물성 교육연구팀 규정

2020. 11. 9 제정
2021. 1. 15 일부개정
2024. 3. 18 일부개정
2024. 6. 13 일부개정
2025. 3. 20 일부개정

개 요

제 1 조 [명칭 및 소재]

본 교육연구팀은 한양대학교 부설 양자물질 극한물성 교육연구팀이라 하며, 한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설치한다.

제 2 조 [목적]

본 교육연구팀은 양자물질 극한물성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능력과 사회적 소통능력을 갖춘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.

- 교육: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
- 연구: 극한 물리환경에서 양자물질 연구
- 국제화: 양자물질 극한물성 연구분야 국제 허브 구축

제 3 조 [사업]

교육연구팀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① 교육연구팀 연구에 특화된 대학원 교육 및 연구 - ‘특성화’
- ②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 지도
- ③ 양자물질 극한물성 분야 관련 각종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움 개최
- ④ 대학원생 해외 파견 교육 - ‘국제화’
- ⑤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
- ⑥ 국제협력사업 - ‘국제화’
- ⑦ 기타 교육연구팀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4 조 [기구]

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장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 5 조 [교육연구팀장]

- ①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및 연구의 기획, 관리, 평가를 책임지며,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② 참여 대학원생/신진연구인력 구성 및 장학금/인건비 배분에 있어 합리성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- ③ 교육연구팀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명의 행정사무원을 둔다.

제 6 조 [운영위원회]

- ① 본 교육연구팀의 예산운영,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, 교육-연구사업 등 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내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기회의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참여교수들에게 수시로 전달한다.

제 7 조 [자문위원회]

- ① 본 교육연구팀을 운영함에 있어, 발전방안을 구상하거나 중요한 결정사항이 필요할 경우 교육연구팀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한다.
- ② 자문위원은 내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운 영

제 8 조 [교육과정]

- ① 교육연구팀장은 매학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사업내용에 맞는 차학기 교과내용을 점검하고 담당교수를 지정한다.

제 9 조 [국제교류]

- ① 양자물질 극한물성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인적교류, 초청세미나 등 교육과 연구관련 프로그램 운영한다.

제 10 조 [해외연수]

- ① 국제학회 인정여부는 본 사업 혹은 연구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② 해외연수는 본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15 일 이내는 단기, 초과는 장기로 구분한다.
- ③ 국제학회는 구두발표만 지원한다.
- ④ 지원순위는 책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장기연수, 해외학회 구두발표, 단기연수 순으로 한다.
- ⑤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국제화경비는 예산 및 본교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

- ⑥ 국제학회 및 해외연수 후 7일 이내에 본 사업 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추후 사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제 11 조 [해외학자 초빙·활용]

- ① 해외학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임용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학위 공동지도를 권장한다.
- ② 초빙학자는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세미나/특강을 실시한다.

제 12 조 [산학협력]

- ① 산업체의 연구진을 겸임교수로 임용하여 옴니버스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
- ② 산업체 연구원들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 유도 한다
- ③ 산학연구 협력사에 대학원생을 파견할 수 있다
- ④ 산학연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.
- 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와 체제비, 강사료는 본교 여비 규정에 따른다.

제 13 조 [성과급]

- ① 성과급 대상은 참여인력(교수, 신진연구인력, 대학원생)으로 정한다.
-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=>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 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정은 참여교수의 경우 논문(20%), 교육영역(20%), 국제화(10%), 참여기여도(50%)의 합으로 하고, 신진인력의 경우 논문(100%),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논문(70%)과 국제화 및 기타 기여도 (30%)의 합으로 한다.
=>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내용(50%), 연구의 우수성(50%)의 합을 고려하여 우수발표상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교육연구팀장은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선정근거와 결과를 전체 참여인원에 공지한다.
- ⑤ 사무원의 성과급은 교육연구팀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우수연구결과를 도출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BK우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 [자체평가]

- ①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,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 재편성 및 지원 대학원생 배정인원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다.
- ② 논문은 SCI(E)에 등재된 것으로 IF 또는 양자물질 극한물질 분야에서 연구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 IF는 해당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한다. 참여교수는 대표논문의 우수성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장에게 제출한다.
- ③ 사업 개시 첫해의 평가는 6개월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, 제 2차년도 말의 평가는 최근 1년 6개월간, 제 3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2년 6개월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.
- ④ 대학원생은 논문의 우수성과 국제활동을 근거로 평가한다.
- 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학위과정생은 학위기간동안 제1 저자로 출간한 SCI급 논문 IF 합 6 이상, 그리고 해외학회 구두발표 1회 이상을 수행해야하며, 미충족시 교육연구팀장이 상황을 반영하여 차기 장학금지급 배정에 반영한다.

제 15 조 [정례 세미나]

- ① 년 1회 정기 워크숍을 개최한다.
- ② 외부 연사를 초청하여 정례세미나를 개최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제 16 조 [참여교수]

- ① 모든 참여교수는 팀의 교육과 연구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② 모든 참여교수는 본 사업을 위해 설계한 특성화과목을 2년에 1과목 이상씩 담당한다 (연구년제외).
- ③ 팀장은 참여교수의 중대한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하거나 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다.
=>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중대한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하거나 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BK21 Four 사업에서 정한 규정내에서 참여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17 조 [장학생]

- ① 장학금지급 대상 대학원생은 선정당시 협약한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예산내에서 지도교수의 선정평가표를 바탕으로 팀장이 선정한다.
- ② 장학생 추천에 필요한 항목 및 배정은 연구 참여도(50점), 연구수행 성실성(30점), 교육연구팀 기여도(20점)으로 하며, 총점 80/10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장학금 지급액은 BK21 Four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- ④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우수성과 교육연구팀 운영 기여도가 매우 우수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BK-우수장학생을 선정 할 수 있다.

제 18 조 [신진연구인력]

- ① 교육연구팀장은 사업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연구원(Post-doc) 등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②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, 채용당시 연구업적이 가장 우수하거나 이에 동등한 조건을 가진 연구자로 교육연

구팀장이 결정한다.

- ③ 채용방식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거나 선발조건과 내용을 본 교육연구팀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- ④ 신진연구인력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2년을 경과하지 않는다. 하지만,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교육연구팀장은 본 사업이 정하는 규정내에서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은 본 사업 참여 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지원, 조언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 19 조 [사무직원]

- ①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운영요원은 교육연구팀장이 임명한다.
- ② 모든 교육연구팀 관련 서류는 교육연구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직원이 관리/보관하고 참여교수의 회람요청이 있으면 공개한다.

제 20 조 [기타사항]

위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구팀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정한다.

- 끝 -

2021.1.15. 개정사항

기존	개정
전체 본문 [팀장]	전체 본문 [교육연구팀장]
제 10 조 [해외연수] ② 해외연수는 본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내는 단기, 초과는 장기로 구분한다.	제 10 조 [해외연수] ② 해외연수는 본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15 일 이내는 단기, 초과는 장기로 구분한다.
제 13 조 [성과급] ②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진인력의 경우 논문(100%),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(70%)과 국제화(30%)의 합으로 한다.	제 13 조 [성과급]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 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진인력의 경우 논문(100%),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(70%)과 국제화 및 기타 기여도 (30%)의 합으로 한다. ④ 교육연구팀장은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선정근거와 결과를 전체 참여인원에 공지한다. (신설) ⑥ 우수연구결과를 도출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BK우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)
제 16 조 [참여교수] ② 팀장은 참여교수의 중대한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하거나 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	제 16 조 [참여교수] ② 모든 참여교수는 본 사업을 위해 설계한 특성화과목을 2년에 1과목 이상씩 담당한다 (연구년제외). (신설) ③ 팀장은 참여교수의 중대한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하거나 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 =>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중대한 건강 이상 등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하거나 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BK21

	Four 사업에서 정한 규정내에서 참여교수 변경할 수 있다.
제 17 조 [장학생] ② 장학금 지급액은 BK21 Four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 ③ 팀장은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우수성과 교육연구팀 운영 기여도가 매우 우수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BK-우수장학생을 선정 할 수 있다.	제 17 조 [장학생] ② 장학생 추천에 필요한 항목 및 배점은 연구 참여도(50점), 연구수행 성실성(30점), 교육연구팀 기여도(20점)으로 하며, 총점 80/10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(신설) ③ 장학금 지급액은 BK21 Four 사업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2024.3.18. 개정사항

기존	개정
제 17 조 [장학생] ① 장학금지급 대상 대학원생은 선정당시 협약한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예산내에서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팀장이 선정한다.	제 17 조 [장학생] ① 장학금지급 대상 대학원생은 선정당시 협약한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예산내에서 지도교수의 선정평가표를 바탕으로 팀장이 선정한다.

2024.6.13. 개정사항

기존	개정
제 13 조 [성과급]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=>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 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	제 13 조 [성과급]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=>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 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=>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내용(50%), 연구의 우수성(50%)의 합을 고려하여 우수 발표상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)

2025.3.20. 개정사항

기존	개정
제 13 조 [성과급] ① 성과급 대상은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으로 정한다.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=>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	제 13 조 [성과급] ① 성과급 대상은 참여인력(교수, 신진연구인력, 대학원생)으로 정한다. ②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SCI 논문 실적 및 국제화 실적을 평가하여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=> 참여인력의 당해연도 논문의 우수성 및 본

<p>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=>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내용(50%), 연구의 우수성(50%)의 합을 고려하여 우수 발표상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신진인력의 경우 논문(100%),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(70%)과 국제화 및 기타 기여도 (30%)의 합으로 한다.</p>	<p>교육연구팀 주제와의 부합성, 국제화 실적과 본 교육연구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예산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참여교수의 경우 논문(20%), 교육영역(20%), 국제화(10%), 참여기여도(50%)의 합으로 하고, 신진인력의 경우 논문(100%),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논문(70%)과 국제화 및 기타 기여도 (30%)의 합으로 한다.</p> <p>=>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내용(50%), 연구의 우수성(50%)의 합을 고려하여 우수 발표상을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
---	--